#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기동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4

발의연월일: 2020. 6. 19.

발 의 자:기동민·한준호·김회재

이정문 · 김영배 · 도종환

김원이 · 황운하 · 강훈식

조오섭 · 정춘숙 · 양정숙

박용진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소방시설 및 방염대상물품을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대 상물을 규정하면서 소방대상물의 규모·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소방시 설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있음.

이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내물품의 방염처리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. 특히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시 세종병원의 화재사건은 중소병원이 소방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줌.

이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관계없이 스 프링클러 설비,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취약한 병의원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·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).

##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각각 "제1항 및 제2항"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본문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"의료기관"이라 한다)의 관계인은 스프링클러 설비와 제연(制煙)설비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의2제2항 중 "전단"을 "전단 및 같은 조 제2항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화재안전기준이"를 "화재안전기준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나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나. 스프링클러 설비
- 바. 제연설비

제12조제1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"를 "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"로 한다.

제47조의2제1항제2호 중 "제9조제2항"을 "제9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47조의3제1항제1호 중 "제9조제1항"을 "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제9조제3항"을 "제9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48조제1항 중 "제9조제3항"을 "제9조제4항"으로 한다.

제48조의2제1호 중 "제9조제2항"을 "제9조제3항"으로 한다.

제53조제1항제1호 중 "전단"을 "전단 및 같은 조 제2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기관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및 방염대상물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· 원 - 의	-11 -71 A1
현 행 	개 정 안
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	제9조(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
는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등)	는 소방시설의 유지·관리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
	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
	기관(이하 "의료기관"이라 한
	다)의 관계인은 스프링클러 설
	비와 제연(制煙)설비를 소방청
	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
	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
	지·관리하여야 한다.
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	3
<u>제1항</u> 에 따른 소방시설이 <u>제1</u>	- <u>제1항 및 제2항제1</u>
<u>항</u> 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	<u>항 및 제2항</u>
치 또는 유지·관리되어 있지	
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	
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	
조치를 명할 수 있다.	
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	<u>4</u>
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	제1항 및 제2항
지·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	
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	
폐쇄(잠금을 포함한다. 이하 같	

다)·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소방시설의 점검·정비를 위한 폐쇄·차단은 할 수 있다.

- 제10조의2(특정소방대상물의 공 저 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 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① (생 략)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·관리한 것으로 본다.

### ③·④ (생 략)

제11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 제 예)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 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<u>화재안전기준이</u>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

세10조의2(특정소방대상물의 공
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
시설의 유지·관리 등) ① (현행
과 같음)
②
전단 및 같은 조 제
2항
<u> </u>
③·④ (현행과 같음)
세11조(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
례) ①
화재안전기준이
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화재
<u> 안전기준이</u>

(건축물의 신축·개축·재축·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 물을 포함한다)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 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 을 적용한다.

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것
가.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<u>나.</u> ~ <u>라.</u> (생 략)

<<u>신</u> 설> 2. · 3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

제12조(소방대상물의 방염 등) ① 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(이하 "방염대상물품"이라한다)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

1
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스프링클러 설비
<u>다.</u> ~ <u>마.</u> (현행 나목부터
라목까지와 같음)
바. 제연설비
2. •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∥12조(소방대상물의 방염 등) ①
의료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특정소방대상물에

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#### ② • ③ (생 략)

제47조의2(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)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·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(이하 "조치명령 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등을 명령한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수있다.

- 1. (생략)
- 2. <u>제9조제2항</u>에 따른 소방시설 에 대한 조치명령
- 3. ~ 8. (생략)
- ② (생략)

제47조의3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 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7조의2(조치명령 등의 기간연
장) ①
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9조제3항</u>
3. ~ 8. (현행과 같음)
<ul><li>3. ~ 6. (연행과 짙음)</li><li>② (현행과 같음)</li></ul>
제47조의3(신고포상금의 지급) ①

- 를 신고할 수 있다.
-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 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·관리 한 자
- 2. <u>제9조제3항</u>을 위반하여 폐 쇄·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3. (생 략)
- ② ③ (생 략)

제48조(벌칙) ①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·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(생략)

- 제48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5조제1항·제2항, <u>제9조제2</u>항, 제10조제2항, 제10조의2제3항, 제12조제2항, 제20조제12항, 제20조제12항, 제20조제12항, 제20조제13항, 제36조제7항 또는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위반한 자
  - 2. ~ 7. (생략)

제53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

1.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
<u>ठॅ</u> }
2. <u>제9조제4항</u>
3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48조(벌칙) ① <u>제9조제4항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48조의2(벌칙)
1제9조제3
<u>~</u>
2. ~ 7. (현행과 같음)
제53조(과태료) ①

어느	하나에	해당하는	는 자에게
느	300만원	이하의	과태료를
부과	한다.		

- 1.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 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·관리한 자
- 2. (생략)
- ②・③ (생 략)

1 <u>전단 및 같은 조</u>
제2항
2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